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의왕시

CONTENTS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I

운영상황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03
2. 고충민원의 처리상황	03
3.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제도 개선 의견표명	04
4. 민원 상담 및 홍보	13
5.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5

II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20
2. 고충민원 조사중 해결된 사례	49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52
4. 기타(안내 회신, 이송 등)	77

III

옴부즈만 제도 안내

1. 개요	83
2. 옴부즈만의 구성	83
3. 옴부즈만의 직무	83
4. 옴부즈만의 관할 및 대상	84
5. 고충민원의 신청	85

IV

조례 및 시행규칙

1.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9
2.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4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운영상황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2. 고충민원의 처리상황
3.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제도 개선 의견표명
4. 민원 상담 및 홍보
5.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I. 운영 상황

1. 고충 민원의 접수 상황

2025년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읍부즈만이 접수한 고충 민원 건수는 53건임

가. 고충 민원 접수 상황

월별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월별 고충 민원 접수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0	1	6	4	3	5	4	8	7	6	3	6	53

나. 고충 민원 접수 방법 상황

고충 민원 접수 방법에 따른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접수 방법별 고충 민원 접수 건수〉

구분	방문	이메일	누리집	국민신문고	합계
건수	14	12	22	5	53

다. 고충 민원 분야별 접수 상황

고충 민원의 분야별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분야별 고충 민원 접수 건수〉

구분	건축	교통	도로	평생 교육	도시 정비	공원 녹지	보육	환경	하천	체육
건수	11	7	5	5	4	4	2	2	2	2

영업	가족관계	안전	정보공개	세정	기타	합계
2	2	2	1	1	1	53

2. 고충 민원 처리 상황

가. 처리 건수

2025년도에 읍부즈만은 5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30건을 조사·처리(시정권고 9건, 의견표명 1건, 조사 중 해결 6건, 기각 6건, 안내회신 8건)하였고, 나머지 23건 중 18건은 해당 부서 등에 이송·이첩 하였으며, 2건은 각하하였고, 2건은 신청 취하되었으며, 1건은 조사 중임

〈고충 민원 처리 상황〉

(단위: 건)

처리 유형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기각	안내 회신	각하	취하	이송 이첩	조사중	합계
건수	9	1	6	6	8	2	2	18	1	53

나. 처리 일수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한 30건의 처리 소요 일수는 신청 취하 2건 및 이송·이첩 18건을 제외한 15일 이내가 21건, 16일 ~ 30일 이내가 9건임(평균 처리기간 13일)

다. 인용률 및 수용률

조사 처리한 30건 중 16건이 인용되었으며(53%), 시정권고·의견표명한 10건 모두 해당 부서에서 수용함

3.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제도 개선 의견표명

가. 추진 배경

우리는 2022. 1. 26.부터 계속하여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보험계약기간은 2022. 1. 26. ~ 2023. 1. 25./ 2023. 1. 26. ~ 2024. 1. 25./ 2024. 1. 26. ~ 2025. 1. 25./ 2025. 1. 26. ~ 2026. 1. 25.로 되어 있고 매년 갱신하고 있음

시민안전보험이란 우리 시민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일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것임

그런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화상 수술비를 제외하고 상해 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상해후유장해가 없거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시민들로서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불만과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나.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의 현황

〈표 1.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가입금액 현황〉

연번	보장 항목	가입금액 (단위:천원)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10,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0,000
3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0
4	대중교통이용 중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0
5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10,000
6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10,000
7	강도상해 사망	10,000
8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0
9	가스상해 사망	10,000
10	가스상해 후유장해	10,000
11	익사 사고 사망	10,000
12	화상 수술비	1,000
13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5,000
14	자연재해 사망	10,000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
최종 납부보험료		170,000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 15개, 보장금액 170,000,000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보장 항목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이 중복되거나 ‘상해’라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음

또한, 보장 항목도 ‘경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이 아닌 ‘상해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하면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소소한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비하는 생활안전보험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인접한 수원특례시나 화성 특례시의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에 대한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이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고 있음

〈표 2. 주요 지자체의 안전보험 현황〉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1,000,000원 한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000원)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화성 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 지원금 지원 (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 1인당 보상한도 20,000,000원 한도	2,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행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 (14급~1급)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1,000,000원 한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000원)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수원 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 지원금 지원 (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 1인당 보상한도 20,000,000원 한도	2,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행 중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3세 미만 수원 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500,000원 한도	50만원 한도 (단, 땅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한도) 장례비: 1인당 2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 하남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한 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인 어린이(0~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한도 (14급~1급)
자전거탑승 중 사고응급실 내 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0만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500만원 한도) ※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진단 위로금	- 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실손보험 가입 무관	1인당 10만원 한도(사고당 1회, 추가 진 단 제외)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등포구민(12세 이하)이 보행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안전보험		
구 분	보 장 한 도	
상해 의료비	-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청구 가능(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 청구당 3만원 공제 -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제외	70만원 한도
상해사망	-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고 당 1회에 한하여 지급(추가진단은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제외	30만원 한도 (4주: 15만원 /6주 : 20만원 /8주이상 : 30만원)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 1 ~ 14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다. 시민안전보험제도의 문제점

〈표 3. 시민안전보험 지급 및 가입 현황〉

연도	보험기간	사고유형	지급건수	지급금액(원)	가입금액(원)
총 계			67	252, 471, 554	404, 612, 360
계			27	203, 776, 554	125, 000, 000
2022	2022. 1. 26. ~2023. 1. 25	급성 감염병 사망	22	198, 776, 554	125, 000, 000
		화상 수술비	5	5, 000, 000	
계			24	40, 295, 000	134, 535, 930
2023	2023. 1. 26~2024. 1. 25.	급성 감염병 사망	1	5, 000, 000	134, 535, 930
		상해사망	1	10, 000, 000	
		상해후유장해	10	13, 295, 000	
		화상 수술비	12	12, 000, 000	
계					145, 076, 430
2024	2024. 1. 26. ~2025. 1. 25	대중교통 후유장해	1	1, 000, 000	145, 076, 430
		상해후유장해	3	3, 400, 000	
		화상 수술비	12	14,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은 15개 보장 항목에 가입금액 170,000,000원의 비교적 많은 액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5종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상호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해라는 하나의 보장 항목에 넣을 수 있음에도 이를 그 원인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험료의 지출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음

한편, <표 3>을 보면, 2022년도(2022. 1. 26. ~ 2023. 1. 25.)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급성 감염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22건 198,776,554원, 화상 수술비 5건 5,000,000원이, 2023년도(2023. 1. 26. ~ 2024. 1. 25.)의 경우에는 급성 감염병 사망 1건 5,000,000원, 상해사망 1건 10,000,000원, 상해후유장해 10건 13,295,000원, 화상 수술비 12건 12,000,000원이, 2024년도(2024. 1. 26. ~ 2025. 1. 25.)에는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1,000,000원, 상해후유장해 3건 3,400,000원, 화상 수술비 12건 14,000,000원이 각각 지급됨

2022년도 ~ 2024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금액과 실제로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2022년도의 경우 시민안전보험료는 125,000,000원,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203,776,554원(보험금 수혜율 약 160%), 2023년도의 경우 보험료는 134,535,930원,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40,295,000원(보험금 수혜율 약 30%), 2024년도의 경우 보험료는 145,076,430원,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18,400,000원(보험금 수혜율 13%)인 것으로 나타남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한 환자가 많았던 시기이고, 따라서 이 시기에 지급된 보험금도 22건 198,776,554원에 달하여 시민들에 대한 많은 혜택, 즉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에는 상해사망 1건 10,000,000원,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1,000,000원, 상해후유장해 13건 16,695,000원, 그리고, 화상 수술비

29건 31,000,000원으로서 다른 보장 항목에 비하여 지급건수는 물론 보험금 지급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임

또한,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보험의 보장 항목 15개 중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항목(급성 감염병 사망, 상해 후유증,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외에는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고, 또한 지급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즉 시내·외 버스, 택시 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배상금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전(補填)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시민안전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민안전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라. 시민안전보험제도 개선 방안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장 항목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혜율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1) 보장 항목의 통합

우선, 기존에 가입된 15종의 보장 항목 중 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상해사망, ⑨ 상해후유장해, ⑩ 익사 사고 사망, ⑪ 가스 상해사망, ⑫ 가스 상해후유장해, ⑬ 화상 수술비를 통합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화상 수술비’의 보장 항목으로 하고, 나머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더하면 결국 3종의 항목(즉,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화상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임

2) 보험 수혜율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해 의료비 항목 신설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2022년도(약 160%)를 제외하고는 13%

~ 3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5개 보장 항목 중 3 ~ 4개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항목은 지급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투입된 보험료에 비하여 시민들에 대한 수혜율이 매우 낮고, 또한 실효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2. 1. 26. ~ 2024. 1. 25. 보험계약 기간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 항목을 살펴보면,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제외하면 모두 통합 보장 항목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화상 수술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수혜율이 낮은 것은 보험금 지급대상을 ‘상해후유장해나 상해사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선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각종 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참고로, 화성 특례시의 경우에 2022년 보험의 상해 의료비의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이 종료될 정도로 수혜율이 극대화됨)

다만,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할 때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는바,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한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제외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다만,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나 광진구처럼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시민의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개 물림 사고 등 포함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1})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특히, 유기견) 물림 사고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실정임

* 1)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따라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상해 의료비’의 내용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뿐만 아니라 개 물림을 포함한 동물에 의한 상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의료비도 포함하여야 할 것임

마.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의 항목은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15개 항목을 ①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화상 수술비, ②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③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등 3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임

여기에 ‘상해 의료비’항목을 신설하되, 보장 내용을 각종 상해사고, 즉 떨어짐, 넘어짐, 점절림, 깔림, 뒤집힘, 부딪힘, 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및 파열, 화재, 이상 온도 및 물체 접촉, 유해 위험물질 노출 및 접촉, 산소결핍(질식), 익수(익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압박(압사),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등 기타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로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다만,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할 때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보험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되,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상해 의료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상해 진단위로금 보장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결국, 위와 같이 보장 항목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로 지급하여야 할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각 항목의 보장한도를 조정하되, 시민안전보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4. 민원 상담 및 홍보

가. 민원 상담

2025년도에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 민원 외에 2025. 11. 21. 및 12. 12. 1건의 민원을 상담하였는데, 상담 내용은 손실보상가액 상향 및 잔여지 매수청구임

【상담 신청 요지】

신청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배수펌프 시설 설치 사업 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평택시에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는바, 신청인은 위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가액을 상향할 것과 편입되고 남은 토지, 즉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함

【상담 내용】

신청인은 총 2필지의 농지(畓)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필지 전체와 나머지 1필지의 일부가 위 사업 구역에 편입되었는바, 위 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나머지 농지, 즉 잔여지는 실제로 편입된 면적보다 약간 넓을 뿐만 아니라 위 농지들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토지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잔여지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지 플랫폼(농지은행)에 위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안내함

* 농지 플랫폼(농지은행) 제도 :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고령 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 후계농,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전업농 등에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규모의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으로 후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제도를 말함

나. 홍보

○ 시 분청 및 각 동 읍부즈만 제도 홍보 배너 및 전단 비치



○ 읍부즈만 제도 홍보 관내 현수막 게시



5. 읍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가. 읍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구성

- 1) 인원: 7명 (위원장 포함)
- 2) 임기: 2024. 12. 27. ~ 2026. 12. 26.
- 3) 기능: 읍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 4) 구성: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6개 분야

나. 2025 제1차 의왕시 읍부즈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1) 일시: 2025. 12. 22. (월) 10:30
- 2) 장소: 시청 소회의실
- 3) 내용: 2025년 읍부즈만 추진성과 공유,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논의
- 4) 참석자: 위원장 및 자문위원 5명
- 5) 보도자료 및 현장 사진

metro경제

의왕시, 읍부즈만 자문회의 열고 2026년 운영 방향 논의

2025-12-24 | 김하민

자문위원 | 김하민 | 김하민 | 김하민



읍부즈만 자문위원회 개최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읍부즈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 5명(위원장 포함)을 비롯해 법률·세무·행정·건축·교통 등 6개 분야의 전문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한 해 동안 읍부즈만 교통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분야별 교통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2026년 읍부즈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성과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에도 의왕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평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교통차량위원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체제로 인해 발생한 교통 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시청 권고나 의견 제서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의왕시에 접수한 읍부즈만 민원은 총 48건으로, 이 중 9건은 시정 권고, 2건은 의견 표명으로 처리했으며, 10건은 조사 과정에서 원인이 해결되는 등 시민 교통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하민 기자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2. 고충민원 조사중 해결된 사례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4. 기타(안내 회신, 이송 등)

II. 고충 민원 처리 사례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가 인용된 사례
 - 가. GB 내의 농로 정비 등(시정권고)
 - 나. □□□□□ *** 강좌 재료비 환불 등(시정권고)
 - 다. 축산물 판매 영업 신고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 라. 건축주 변경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 마.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 바. 하천·계곡 지킴이 응시 자격 개선(의견표명)
2. 고충 민원 조사 중 해결된 사례
 - 가. 건축허가 관련 불필요한 보완 시정
 - 나. 가판대 전기 사용 신청 동의
 - 다. 도로상의 폐기물처리
 - 라. 불법주차 대책 수립
 - 마. 불법주차단속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 가.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등
 - 나. 도로점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 다. GB 내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
 - 라. 파크골프장 조성 철회
 - 마. 노후주택 개량공사 자부담금 환수 취소
 - 바.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거부처분 취소
4. 기타(이첩, 안내 회신 등)
 - 가. 공원 내 수목 이식 중단
 -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다. 자동차 취득세 부과 이의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가 인용된 사례

가. GB 내의 농로 정비 등(시정권고)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의왕시 ☆☆동 738 전 42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고자 하는데, 같은 동 908-1 도 1,276㎡(농로) 중 같은 동 737 답 196㎡, 위 농로 및 같은 동 739 답 649㎡ 등 3필의 토지가 합쳐지는 부분 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농로, 즉 아래의 <그림 1. 지적도>에 표시된 A 부분에서 B 부분을 거쳐 C 부분에 이르는 농로(이하 ‘이 민원 농로’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농로를 도저히 이용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도로(같은 동 999 도로(중로 1류).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옹벽(아래의 그림 3.의 ○표 부분)에 계단(이하 ‘이 민원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 민원 농로를 정비하여 달라.



<그림 1. 지적도>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도로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옹벽 구조물의 높은 고저 차로 인한 위험성, 보행 이용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성 저하 등 공익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 민원 계단의 설치에 매우 곤란하다.

다만, 이 민원 토지의 진입로가 여의찮은 실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농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1. 5. 2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하여 오면서 이 민원 농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농로는 농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풀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토사가 유실되어 있다.



〈그림 2. 이 민원 농로의 전경〉



〈그림 3. 이 민원 도로의 옹벽과 자전거도로 및 보도〉

한편, 이 민원 토지와 접하고 있는 이 민원 도로는 아래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도로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경계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계단의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은 그림 3.의 ○ 표시부분이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75조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제4항에 따르면,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르면, 총괄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관리 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 잔여지 등 재산 2. 관리 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2024. 7. 21. 국토교통부 훈령 제1779호로 발령된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임재산 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입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 민원 계단의 설치 요구(주위적 신청)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그림 3.의 ○ 표시부분의 옹벽은 그 높이가 2.12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 이 민원 계단을 설치한다면 이 민원 도로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 「도로법」 제3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건설은 물론 도로의 유지·관리를 함에서도 「도로법」을 비롯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따라 옹벽에 붙여서 이 민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의 폭(적어도 40~50cm 이상)만큼 자전거도로의 폭이 축소되어 자전거도로의 최소폭 1.5m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계단의 폭만큼 보도의 폭을 1.5m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경우에 축소된 보도의 폭은 2m에 미치지 못하여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3항에 어긋나고, 또한 자전거도로 및 보도도 ‘4’ 형태가 되어“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4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계단으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도로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를 제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계단의 설치로 인하여 보행 이용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성 저하 등 공익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민원 계단의 설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보도를 가로질러 이 민원 계단을 설치하면, 그 경사도는 최소 45도(10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전거로는 이 민원 계단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음은 물론 보도의 대부분이 계단구조물에 포함되게 되어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의 최소폭 2m 확보도 곤란하게 된다.

다) 이 민원 농로의 정비 요구(예비적 신청)에 대한 판단

1973년 (구)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현 위치에 이 민원 농로가 표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민원 농로는 1972년 이전(이 민원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국유재산법」 제25조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농로는 그 폭이 1.5m ~ 2.5m의 농로로서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넓지는 아니하나 소규모의 농기계나 손수레 등이 출입할 정도에 해당하는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또 일부 구간은 토사가 유실되어 농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는 등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우선 이 민원 농로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성과도에 따라 소규모의 농기계나 손수레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농로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로의 정비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 *** 강좌 재료비 환불 등(시정권고)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2025. 5. ~ 8. 피신청인이 개설한 제2기‘*** 강좌’(이하 ‘이 민원 강좌’라 한다)에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으로서 ① 이 민원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이하 ‘이 민원 강사’라 한다)의 강의 태도 및 방식의 문제점, ② 이 민원 강좌에서 사용될 재료비(이하 ‘이 민원 재료비’라 한다) 산정의 문제점, ③ 이 민원 강사가 이 민원 강좌의 수강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재료의 제공, ④ 위의 ① 내지 ③의 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 불만, ⑤ 이 민원 강좌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 대한 익명 보장 미흡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강좌에서 사용될 재료의 비용 산정 및 수납, 그리고 강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강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순수 재료비로 산정하게 하는 등 재료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3) 사실관계

이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읍부즈만은 2025. 9. 12. 13:00 ~ 15:00 신청인 ○○○, 피신청인(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참고인(강사 및 수강생 1명)에 대한 출석 조사를 시행하였다. 출석 조사에서 각 당사자와 강사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사는, 재료비 산정은 강사 본인이 책정한 것이며, 산정된 재료비는 순수한 재료 구매비용 외에 인건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또한, 양파, 소시지, 계란 등을 2주일에 한 번씩 구매함에 따라 종종 상하거나 부패한 상태의 재료가 공급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또한 재료의 일부는 전기(前期)의 강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본 강좌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강사의 강의 태도 및 방식에 대한 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한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익명 보장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만족도 조사가 휴대전화 메시지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실명 공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4) 판 단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2 제1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이 민원 재료비의 산정이 적정·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수강생들이 이 민원 강좌에서 사용할 재료를 이 민원 강사는 18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된 재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52,465원에 불과함에도 재료비 180,000원을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강좌에서 사용될 재료의 비용 산정 및 수납은 전적으로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나 다툼이 있다면 수강생과 강사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민원 강좌는 사설학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제작·배포한 “2025년 제2기 *** 강좌 수강생 모집” 리플렛에 따르면, 이 민원 강좌에 ‘재료비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강좌 관련 누리집 ‘강좌 신청알림마당’에 게시된 이 민원 강좌의 강의계획서에도 ‘재료비 180,000원’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강좌의 수강생들은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 민원 재료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민원 재료를 납부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 민원 재료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2025. 9. 12. 우리 읍부즈만이 실시한 출석 조사에서 이 민원 강사는 재료비를 설명하면서 이 민원 재료비에 인건비 또는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재료를 영업용으로 구매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 간접비 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민원 강좌의 강의계획서 ‘수강생 준비 사항’ 난에는 “재료비: 180,000원 (1인) / 내역: 1개월분 45,000원×4개월”로 표시되어 있을 뿐 별도의 간접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민원 재료비는 실제로 이 민원 강좌에 사용될 재료를 구매하는 금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간접비 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강좌 모집 리플렛이나 강의계획서 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민원 강사는 이 민원 재료를 영업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재료가 비싸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영업장에서는 재료를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일반소비자가 소량 구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위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밀가루 2.5kg/포는 5,500원 정도인 데 반하여 20kg/포는 19,000원 ~ 24,000원으로 소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민원 재료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강좌에서 실제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재료를 52,465원으로 산정했지만 이 민원 강좌가 종료된 후 이 민원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산정한 환불금은 929,120원(1인당 116,140원)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실제로 강사가 사용한 재료가 510,88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강사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터넷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 민원 재료를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강좌에 사용될 재료를 강사가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전기(前期)의 강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이 민원 강좌에서 사용함에 따라 부패하거나 변질된 재료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테면, 양파는 곰팡이가 피어날 정도로 부패해 있었고, 계란은 이미 껍질이 깨졌거나 노른자가 퍼질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있었으며, 식용유는 산패되었거나 이를 담은 플라스틱병의 색깔이 변질되어 지저분하였고, 소시지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변질되어 미끄덩거렸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 민원 강사는 이 민원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위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민원 강사는 우리 음부즈만의 출석 조사에서 전기(前期)의 강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이 민원 강좌에서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재료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체로 2주일에 한 번 구매한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하건대, 제빵에 사용될 재료 중 밀가루 등은 밀봉한다면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구매하여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파, 계란, 소시지, 식용유 등의 재료는 조금만 부주의하면 쉽게 변질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재료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강좌가 있는 당일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강사가 일괄 구매하여 수강생들에게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강생 대표가 이를 구매하여 배분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강사의 강의 태도 및 방식 등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신청인은 이 민원 강좌를 수강하면서 이 민원 강사에게 질문을 자주 하였지만 이 민원 강사는 친절하게 답변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이 민원 강사의 강의 태도 및 방식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한다는(「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강의 태도 및 방식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사의 강의 태도 및 방식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해당 강사에게 향후 강사 모집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의 종강 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외에 강사 및 강의에 대한 건의나 불만은 물론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수강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평생학습관 곳곳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민원 강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되, 피신청인이 진행하고 있는 각 강좌의 수강생 중에는 고령자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 만족도 조사 외에 고령자 등에게는 만족도 조사서를 직접 배포,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라) 불량 강사와의 협약 해지 및 수업 방해자에 대한 수강 제한 등
신청인은 2025. 7. 9. 이 민원 강사의 강의 태도 및 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0일 이에 대한 시정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에도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이 민원 강사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옴부즈만의 출석 조사에서 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강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을 계속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 민원 강사의 경우처럼 피신청인의 정당한 지시 거부 또는 지시 불이행이나 강사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3조 제1항을 참조하여 위 조례에 이를 설치하여 이 민원 강사처럼 불량한 강사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강의 태도나 방식, 그리고 재료비 산정의 문제 등 강좌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업 시간에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수강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때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경우처럼 수업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강좌와 관련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 대학의 운영에 제도상 개선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축산물판매영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2025. 5. 28.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받은 의왕시 ***동 일원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에서 축산물판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7. 3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려면 이 민원 상가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상가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시설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상가는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서만 있을 뿐 임시사용승인서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31. 이 민원 영업 신고를 반려처분(이하 ‘이 민원 반려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어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위 구비서류 등

과 함께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 관청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상가에 대해서는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만 행해졌을 뿐 준공 인가된 것은 아니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설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의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임시사용승인서가 아니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갈음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이 민원 상가는 의왕시 ‘의왕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의왕시 고시 제2011-◆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후 의왕시 고시 제2018-◆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5. 4. 사업 시행자인 의왕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송전선로 이전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함에 따라 의왕시 도시정비과장에게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도시정비과장은 완공된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25. 5. 공동주택 20개 동 2,000여 세대를 비롯한 부대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이 민원 상가가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하였다.

도시정비과장이 우리 읍부즈만에게 제출한 시설내역에 따르면, 이 민원 상가는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지하 3층에 위치하여 있는데, 그 전용면적은 65.0821㎡로서 권장 면적 26.4㎡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벽체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29조 관련)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에서 이 민원 영업하기 위하여 2025. 6. 21. 이 민원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월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4) 판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29조 관련) 제8호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수돗물 등의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화장실도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군수 등은 준공 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며,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 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생성(작성)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건축물 현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군수 등은 준공 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며,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 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어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 관청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상가에 대해서는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만 행해졌을 뿐 준공 인가된 것은 아니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는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 관청이 건축물대장 외에 임시 사용승인서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법규의 유추 적용은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면 유추 적용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참조), 우선 이 민원 영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입법의 의도 내지 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도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식품위생법」과 매우 유사한 입법 의도 내지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

법」에 따른 영업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도 영업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양자의 규범체계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의 사안은 식품위생법상 신고영업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신고서의 확인 절차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민원 사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영업 신고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임시 사용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의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임시사용승인서가 아니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갈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서가 교부되면 임시사용승인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가 부여되고 있는 등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도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사용승인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건축주 변경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의왕시 **동 대 70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연면적 295.62㎡,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10.2m.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4년경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이 민원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일단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면적 231.14㎡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다가 건축주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인 신청외 ○○○으로 변경한 후 종래의 건축물 연면적 295.62㎡보다 약간 좁은 293.27㎡로 변경된 건축허가 사항 변경 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그러나 이 민원 건축허가는 그 형식이 신축 허가이지만 실제로는 개축 허가에 해당하니 건축 관계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하여 2024. 12. 18.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 신청인처럼 5년 이상 거주자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32㎡(지정당시거주자는 300㎡) 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신청외 ○○○으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이 민원 건축물의 연면적에 근접한 293.27㎡를 건축하는 이 민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전 다시 신청인으로 건축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써,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주를 신청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주 변경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4. 12. 18. 건축허가[수허가자: 신청인, 연면적 231.14㎡]
- 2025. 01. 02. 건축 착공신고 수리

- 2025. 04. 09.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신청인 → ○○○)
- 2025. 04. 1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
- 2025. 05. 01. 허가사항 변경 통지 [건축면적 196.56㎡ → 261.91㎡, 연면적 231.14㎡ → 293.27㎡]
- 2025. 09. 10. 건축주 변경(○○○→신청인) 신고
- 2025. 09. 10. 건축주 변경 신고 보완요청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 증빙서류 제출)
- 2025. 09. 15. 건축주 변경 신고 취하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6. 12. 20. 이 민원 건축물의 소재지인 의왕시 **동 634-2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0. 5. 19.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8.54㎡, 1층 일반 목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8.54㎡, 2층 일반 목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8.54㎡, 높이 10.2m, 연면적 295.62㎡로, 그리고 소유자 현황에는 신청인이 2018. 10. 23. 소유권 지분(1/1)을 회복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 제1항 관련) 제5호 라목 2) 가)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나목 1)에 따르면,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할 때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고 있으며, 자목에 따르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은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증축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하게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였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

준 제2호 나목 1)에 따르면,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는 ‘5년 이상 거주자’는 높이 3층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 이하를 건축할 수 있는 반면에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바, 이 민원 건축허가를 행한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의 ○○○이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5년 이상 거주자에 불과한 신청인을 건축주로 변경하게 되면 위 규정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신청인을 건축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나목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목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은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으며,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증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건축물이 적법하게 300㎡ 이하로 건축되었다면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5년 이상 거주자도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의하여 종전과 같이 3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아닌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의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축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1}, 그리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건축된 그 대지에 개축하는 방안을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개축 허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나목 1)에 따른 신축 허가를 받았다가 ‘지정 당시의 거주자’인 신청의 ○○○으로 건축주 변경을 한 후 다시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연면적에 상당하는 연면적을 확보한 점,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제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1〕 및〔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또는 높이의 제한보다는 주로 연면적이나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축과 재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²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³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재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즉 건축물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하게 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건축허가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14.4m로서 이 민원 건축물보다 4.2m 정도 높으나 연면적이나 층수 등은 이 민원 건축물의 규모 이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민원 건축허가로 축조하게 되는 새로운 건축물은 종전의 건축물인 이 민원 건축물의 규모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건축허가는 비록 그 형식이 신축 허가로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축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건축허가는 개축 허가에 해당하고, 또한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자목에 따른 개축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민원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2호 자목이 개

축이나 재축 등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4974 판결)

* 2)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해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 3) 관례나 국토교통부의 다수의 해석례(건축기획과-1901, 2014. 10. 22.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종전과 같은 규모”란 연면적이 나 바닥면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형적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축의 정의에서 보듯이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도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축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거부처분 취소(시정권고)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안양시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던 중 최근에 신축한 의왕시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35㎡(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로 위의 영업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25년 8월경,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 신고 수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의 건축물대장이 생성(작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 민원 영업장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던 사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임에도 단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의료기기판매업 개설 및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영업장은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가 통지된 상태일 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 영업장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안양시에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민원 영업장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25년 8월경,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영업장이 속하여 있는 근린생활시설(연도형 상가)은 2025년 5월경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통지가 행하여졌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평면도에 따르면, 이 민원 영업장은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지하 3층에 위치하여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의료기기법】

•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2.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④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 략〉

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건축법】

•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중 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

1.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될 것
2.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하 생략〉

나) 피신청인은, 의료기기판매업 개설 및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영업장은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가 통지된 상태일 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 영업장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식품 소분·판매업의 경우처럼 영업장의 시설 기준이나 그에 따른 시설의 용도나 평면도 등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법규의 유추 적용은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이 유사하다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참조), 우선 이 민원 영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입법의 의도 내지 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한 「의료기기법」 제1조도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식품위생법」과 매우 유사한 입법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서는 영업신고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판매

하는 영업장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지만, 그 외에는 양자의 규범체계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이 민원 사안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신청인은 영업 신고된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민원 영업장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가 되었지만,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도 임시사용승인으로 의제가 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신청인은 관련 부서(도시정비과장)로부터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위치, 용도, 면적 및 평면도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이 민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 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바. 하천·계곡 지킴이 응시 자격 개선(의견표명)

1) 신청 취지 및 이유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시를 수행할 곳의 해당 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를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유독 의왕 시민에게만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개선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조례로서, 이 민원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된 것은 2023년 경기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하천·계곡 지킴이가 불법행위를 행한 같은 지역 주민을 감싼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겠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2025년 하천·계곡 지킴이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그 신청 자격을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의왕 시민이 아닌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사업 특성상 의왕시 거주자 지원 불가)”로 공고하였으며, 실제로 채용인원 2명 모두 의왕 시민이 아닌 자를 채용하였다.

이 민원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 활동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은 “하천 지킴이는 광산구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3항은 “하천 지킴이는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괴산군·단양군·진천군 및 영동군은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곡수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자격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계곡수 인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3조 제1호).

4) 판 단

이 민원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도지사는 감시를 수행할 곳의 해당 지역 출신을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지역 출신을 하천·계곡 지킴이가 지연(地緣)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계곡을 오염시키거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자와의 유착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민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는 하천·계곡 지킴이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민원 조례는 하천·계곡 지킴

이의 조별 담당 지역을 지정하여 책임감시체제로 운영함은 물론 동일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및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나아가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함(제10조)은 물론 매년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제11조), 시장·군수로 하여금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 사항 관리 및 조치 결과를 사업 추진 후 2개월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하는(제12조) 등 하천·계곡 지킴이의 공정한 직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따라 하천·계곡 지킴이의 공정한 활동을 확보(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용계약 시 이를 테면 공정업무수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하천·계곡 지킴이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하천·계곡 지킴이 제도는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고, 또한 경기도 및 우리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처럼 오히려 “감시를 수행할 곳의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이 시책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이 민원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가 삭제되도록 경기도지사와 적극 협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고충 민원 조사 중 해결된 사례

가. 건축허가 관련 불필요한 보완 시정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의왕시 민간지원공급촉진지구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에 대한 보완요구로 일반적인 허가 처리 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특히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일괄하여 검토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지연한 것은 「건축법」 제1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이를 시정하라

2) 조사 중 해결

본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2025년 3월경 우리 읍부즈만이 건축허가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1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건축허가 관련 제출 서류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에 대한 보완 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바, 우리 시 건축부서에서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할 때 보완 완료된 위 구조도면 등을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함은 물론, 이 민원과 같이 허가신청 사항과 관련 도서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보완 사항 요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의 원활한 소통 미흡 및 상호 간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대면 면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허가 신청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므로, 이로써 신청인이 제기한 불편 사항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본 고충 민원을 종결함

나. 가판대 전기 사용 신청 동의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이 2025년 3월경 구두 수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두 수선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구두 수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또한 구두 수선대가 설치될 소재지의 소유자가 의

왕시이므로, 한전에서 요구하는 전기 사용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왕시)의 동의를 받게 하여 달라.

2) 조사 중 해결

본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2025. 3월경 위 구두 수선대 설치 관련 도로점용 허가를 한 도로건설과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전기 사용신청 동의서는 도로점용 허가증으로 갈음하도록 한전에 이미 고지하였고, 한전도 이에 따라 전기 사용신청 동의서 없이 전기 사용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고충 민원은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여 본 고충 민원을 종결함

다. 도로상의 폐기물처리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의왕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장에서 당 공사장의 펜스 옆 인도 부분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버려 비산먼지는 물론 주변 환경에 상당한 위해가 되고 있으니, 이를 신속하게 치워달라.

2) 조사 중 해결

옴부즈만은 본 고충 민원 접수 후 곧바로 의왕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나가서 공사장의 펜스 옆 인도 부분에 콘크리트 폐기물이 버려진 것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이를 치울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는 2025. 4. 10. 콘크리트 폐기물을 치우고 위 인도 부분에 골재의 포설을 완료하였음을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였는바, 이로써 신청인의 고충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본 고충 민원을 종결함

라. 불법주차 대책 수립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의왕시에 있는 빌라와 커피전문점 사이의 이면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택인 위 빌라에 진출입하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위 불법주차 차량이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 시행하라

2) 조사 중 해결

본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단속 관련 부서인 우리 시 교통정책과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이면도로지만 교통량이 많은 인근 대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의왕소방서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차 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민원 도로에 화단 등 주정차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민원 도로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위 고충 민원은 이로써 해결될 것으로 보아 본 고충 민원을 종결함

마. 불법주차단속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의왕시 새말길의 좌측에 화물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니, 빠른 조치를 하여 달라

2) 조사 중 해결

본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관련 부서인 우리 시 교통정책과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25년 4월경,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 민원 자동차의 운전기사로부터 앞으로는 위 지역에 불법주차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위 고충 민원은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아 본 고충 민원을 종결함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가. 시민안전보험금지급 등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치료를 받고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니,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의 경우처럼 가로등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판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라.

2) 기각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화상 수술비를 제외하고 상해후유장애가 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이 아닌 일반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시민안전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등에 안전판 및 보호막 설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이를 설치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의왕시 ❖❖동 781-3 창 350㎡에 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라 한다)를 건축한 후 같은 동 999 도로(중로1류,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서 직접 위 토지로 출입하지 못하고 이 민원 창고 앞 이 민원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40m 정도 떨어진 같은 동 782-1 도로 및 같은 동 908 농로(이하 ‘이 민원 이면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민원 창고에 출입했는데, 특히 같은 동 908 농로는 그 폭이 좁아 자동차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같은 동 781-17 답 38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직접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2025. 3. 18.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민원 도로점용허가’이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1.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민원 반려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자 하는 진출입로 위치는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과 인접해 있어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민원 반려처분을 행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민원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창고에 진출입했으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반려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기관(의왕경찰서장)의 의견

신청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 아파트 입구의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의 왼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나아가 이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점용 허가로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버스 및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은 물론 교통의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이 2025. 3. 18.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역, 즉 이 민원 토지는 *** 아파트 입구의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의 왼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나아가 이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를 건축한 후 이 민원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창고에 출입했으며, 이 민원 창고와 이 민원 토지는 연접하여 있어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부지와 이 민원 토지를 1필의 토지처럼 이용해 오고 있다.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2025. 5. 26. 의왕경찰서장에게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4. 의왕경찰서장은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가 이루어지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은 물론 교통의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5) 판 단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의왕경찰서장이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인근 아파트 입구의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이 민원 창고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이 민원 토지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나아가 이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가 이루어져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이 민원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버스와,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동선이 겹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지역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약간의 부주의에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청인이 이면도로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의 해소(즉, 사익)보다는 “교통사고의 위험 및 원활한

차량흐름의 저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반려처분이 재량을 그르쳐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GB 내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외 ○○○는 2025년 2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의왕시에 있는 대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197.76㎡, 연면적 299.81㎡)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해 4월 건축 변경(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면적 196.7㎡, 연면적 299.28㎡)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달에 신청인은 위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신청외 ○○○→신청인)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새로운 건축주(즉, 신청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건축 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민원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건축 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주 변경 신고 절차에 따라 가능하며, 다만, 건축주의 사망 및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 건축허가권의 승계에 관한 상속 및 경매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었을 때만 건축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신청외 ○○○는 2025년 2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의왕시에 있는 대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197.76㎡, 연면적 299.81㎡)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건축 변경(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면적 196.7㎡, 연면적 299.28㎡) 허가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4월 신청인은 신청외 ○○○가 받은 위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신청외 ○○○→신청인)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건축 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거부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신청인은, 대법원의 판례(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건축주에게 [별표 1] 제5호 라목 2) 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면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민원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별표 1] 제5호 라목 2) 가)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에

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요건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같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려면 건축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양수한 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라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그 양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건축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을 갖추지 아니한 채 건축주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기에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 이유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이 민원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민원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파크골프장 조성 철회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의왕시는 학의천 파크골프장과 금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의 적정성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라.

2)기 각

현재 의왕시에서는 포일동 654-1 소재 산빛 근린공원의 일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파크골프장 9홀을, 그리고 삼동 749 의왕산업단지 내 금천 저수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9홀을 각각 조성하고 있다.

위 2곳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파크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의왕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은 의왕시장 공약사항이며, 또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의 규모도 크지 않아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 또는 하천점용 허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사업 추진 절차에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노후주택 개량공사 자부담금 환수 취소

1) 신청 취지 및 이유

가) 신청 취지 1

신청인은 의왕시에 있는 **빌라 5동(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2020년 2월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민원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후 같은 해 9월 총공사비 11,107,000원 중 자부담액 2,776,750원을 제외한 보조액 8,330,250원(이하 ‘이 민원 보조금’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으나, 신청인이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부담에 해당하는 위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8,330,250원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공사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이 민원 보조금의 환수통지를 취소하여 달라.

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사기나 부정한 목적 없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을 공사업체에 입금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한 것이니, 2025년 7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보조금 중 일부(자부담)인 2,776,750원(이하 ‘이 민원 자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금을 감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공사업체가 사전공모하여 자부담(20% 이상 의무) 없이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허위 및 거짓 청구에 대한 강경 대응 및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전액인 8,330,250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실제로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자부담금에 대해서만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이 민원 자부담금의 환수 결정은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20% 이상)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 민원 자부담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0년 2월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

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를 갖추어 총공사비 11,800,000원(보조액 9,440,000원, 자체 부담액 2,360,000원)으로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후, 같은 해 4월 말일경에 사업 착수신고서(공사업체 ‘(주)★★건설’, 계약금액 및 총공사금액 11,107,000원, 공사착수일 2020년 5월 준공 예정일 같은 해 6월)를 제출하고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8월 신청인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총공사비 11,107,000원, 보조액 8,330,250원, 자체 부담액 2,776,750원)를 제출한 후 같은 해 9월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청구를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조금 8,330,250원을 받았다.

한편, ●●지방법원이 2024. 9. 30. 발령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4.경 이 민원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건설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외 ◇◇◇로부터 “원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의왕시청으로부터 공사비의 8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20%의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자체 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보수공사비용의 자체 부담금 2,776,750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공사비 11,107,000원, 보조액 8,330,250원, 자체 부담액 2,776,750원’이라고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년 9월경 의왕시청으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8,330,250원을 받았고, 위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신청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하였다.

피신청인은 ●●지방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청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지방보조금 8,330,250원의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로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인 등의 어려

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보조금 8,330,250원의 전액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자부담금에 대해서만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4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이하 생략〉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5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 ① 의왕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하 생략〉

나) '신청취지 1'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8,330,250원 전액을 환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바, 이 민원 보조금 8,330,250원 전액 환수 결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2025년 7월 보조금 8,330,250원의 전액 환수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보조금 전액 환수 취소 요구는 이로써 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신청 취지 2'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사기나 부정한 목적 없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위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을 공사업체에 입금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한 것이니, 이 민원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2월 신청인은 보조금과 자부담액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날인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려면 2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24년 9월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부담 2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민원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건설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외 ☆☆☆의 제안에 따라 자체 부담금 없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공

사비용의 자체 부담금 2,776,750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총공사비 11,107,000원, 보조액 8,330,250원, 자체 부담액 2,776,750원’이라고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왕시)으로부터 보조금 8,330,250원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민원 자부담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았을 때 징벌적 의미의 제재부가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자부담 20% 조건에 따라 자부담 후 위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환급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민원 자부담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부담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바.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의왕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 공인중개사(이하 ‘이 민원 중개사’라 한다)의 중개로 2013년 4월 신청인의 자(이하 ‘이 민원 임대인’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 민원 임대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그 후 임차인(이하 ‘이 민원 임차인’이라 한다)과의 합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수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1. 5. 6.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민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을 2021. 5. 6. ~ 2023. 5. 6.로 하되, ‘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50,000,000원, 그리고 잔금은 150,000,000원, 나머지 금액 50,000,000원은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민원 임차인이 이 민원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보다 약 1개월이 지난 2023. 6. 12.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이주하였음에도, 이 민원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이 민원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상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2년 2개월 동안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임차인에게 이 민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하였던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이 민원 주택에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에게 알려준 은행의 계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2025. 8. 25. 위 관리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 임차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상의 부주의로 이 민원 주택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재하에 이를 잘 해결한 후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임차인과 고의로 신청인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으니, 이 민원 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정산 문제는 이미 완료된 중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이 민원 임대인과 이 민원 임차인의 계약 이행의 문제로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이 민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이 민원 임차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이 민원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입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 민원 임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그 목적과 경위,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했을 때,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2013년 4월 체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속한 의왕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같은 시 소재***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 민원 임대인을 대리하여 이 민원 임대인의 모

(母)와 이 민원 임차인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3. 5. ~ 2015. 5.)을 체결하였다.

2021. 5. 6.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인과 이 민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 민원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21. 5. 6. ~ 2023. 5. 6.)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보증금을 550,000,000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50,000,000원, 그리고 잔금은 150,000,000원, 나머지 금액 50,000,000원은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이 민원 임차인은 이 민원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보다 약 1개월이 지난 2023. 6. 12.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이주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 (금지행위)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36조 (자격의 정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종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및 제3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임차인에게 수협의 계좌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으니, 이 민원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나 기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정지 처분은 피신청인 의왕시장이 아닌 시·도지사(이 민원의 경우는 경기도지사) 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지적하는 이 민원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정산내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 및 이 민원 주택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게 한 이 민원 임차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중재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이 민원의 경우,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이 민원 임대인(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차인과의 정산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시점은 최초 중개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한 이 민원 임대차계약마저 종료된 이후이고, 더욱이 신청인과 이 민원 임차인은 이 민원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직접 만나서 ‘관리비 보관증’을 작성하는 등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를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의 정산내역 고지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관련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관계의 조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임차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상의 부주의로 이 민원 주택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재하에 이를 잘 해결한 후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임차인과 고의로 신청인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제29조 및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는 ‘중개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의무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계약 조건의 교섭,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계약의 성립을 위한 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요구되며,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완성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문제나 임대차계약 관계가 모두 종료된 이후 부동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거래 당사자 간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중재하지 아니한 이 민원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알린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신청인은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이 민원 임차인에게 이 민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하였던 은행 계좌가 아닌 이 민원 주택에 현재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에게 알려준 은행의 계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2025. 8. 25. 위 관리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

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민원의 경우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이 민원 임차인에게 이 민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이 민원 임차인은 이 민원 공인중개사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설령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이 민원 임차인에게 이 민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민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민원 임대인의 재산상 이익(채권 회수)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이 민원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이 민원 공인중개사가 거래 종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더욱이 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계좌를 알려준 것은 거래의 편의와 정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기타(이첩·안내회신 등)

가. 공원 내 수목이식 중단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연접한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여 달라.

2) 안내 회신

우리 읍부즈만이 현지 조사 및 관련 부서(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공원 인근의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이 월곶관교선(경강선 연결) 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위 공원으로 가스관을 옮기게 되어, 의왕시에서는 가스관 매설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주)과 협의하여 가스관 이설 대지에 심겨 있는 수목을 다른 공원으로 반출, 이식하게 하고, 위 공원의 땅속에 가스관 매설이 완료되면 그 위치에 새로운 나무를 심도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읍부즈만은 해당 부서가 위 공원에 새로운 나무를 심은 후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 회신함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의 동생 ◇◇◇의 사망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장에 신고하여 봉천동장이 주민등록표에 '1980. 3. 24. 화장 신고필 1983. 8. 27. 사망신고 필'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적지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를 정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여 달라.

2) 타 기관에 이송

가) 사실관계

1979. 5.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서기보 ○○○이 작성하고 수정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신청인의 동생 ◇◇◇의 “변동 사유”에 “80. 3.

24. 화장 신고필, 83. 8. 27. 사망신고 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날인도 되어 있고, 나아가 망 ◇◇◇의 란을 붉은 선 2개를 그어 사망하였음(제적 또는 말소)을 표시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주민등록법」(1980. 12. 31. 법률 제3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3항에는 “신고 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 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이송받아 호적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하였으나 정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판단하건대, 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신청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의 부모는 ◇◇◇가 사망함에 따라 망 ◇◇◇를 화장한 후 1980. 3. 24. 이를 봉천6동장에게 신고하였고, 또한 1983. 8. 27. ◇◇◇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봉천동장은 구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망 ◇◇◇의 본적지의 구청장, 즉 마포구청장(망 ◇◇◇의 본적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므로, 이 사안의 본적지 구청장은 마포구청장임)에게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이송하고 망 ◇◇◇를 주민등록표에서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적지의 마포구청장이 봉천동장으로부터 망 ◇◇◇의 사망 신고를 이송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신청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사망신고가 행해졌으므로 현 주소지인 의왕시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봉천동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즉, 망 ◇◇◇의 사망신고를 접수한 봉천동장이 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관악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악구청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 결론

결론적으로 본 민원을 봉천동장에게 이송하여 봉천동장이 위와 같이 처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 취득세 부과 이의

1) 고충 민원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썬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노인 연금 수령을 위해 2024. 9. 27. 이 민원 차량의 지분 99%를 신청인에게 이전하였는데, 당시 세정과에서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 15,0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다가 올해 12월 29일,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신청인의 지분 99%를 다시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차량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현 담당자는 취득세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2024. 9. 27.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알려 달라

2) 안내 회신

우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바,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차량을 무상 취득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 적재량별·제조 연도별 제조 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차량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70/1000, 즉 7%)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올해 12. 29. 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보면 시가표준액 29,509,920원 $\times$ 0.07 = 2,065,690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신청인이 소유한 지분 99%를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이전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4. 9. 27. 신청인이 등록세 15,000원만을 납부한 것은 당시 담당자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옴부즈만 제도 안내

1. 개요
2. 옴부즈만의 구성
3. 옴부즈만의 직무
4. 옴부즈만의 관할 및 대상
5. 고충민원의 신청

Ⅲ. 옴부즈만 제도 안내

1. 개요

의왕시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정을 감시하여 비위 시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왕시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2024년 8월에 발족함

2. 옴부즈만의 구성

- 가.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이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
- 나. 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나, 사무국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
- 다. 현 의왕시 옴부즈만

사진	성명	주요 경력
	차태환 옴부즈만	· 前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 前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만 · 前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 前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3. 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①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 ②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③ 의왕시장 또는 의왕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 ④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⑤ 시장과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⑥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⑦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⑧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⑨ 그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옴부즈만의 관할 및 대상

시 및 그 소속 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 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즉 고충 민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 민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는 고충 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으나,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고충 민원을 각하할 수 있음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또는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의왕시 및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⑨ 그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⑩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나. 조사 제외 대상

접수된 고충 민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함

- ① 각하의 대상
- ② 고충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그밖에 고충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고충 민원의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옴부즈만 고충 민원의 신청

가.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함

- 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②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 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명칭
- ④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여부
- 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그 신청 내용
- 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⑦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⑧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나.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다. 고충 민원은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받고 있으며, 고충 민원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는 보호됨

라. 고충 민원이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익명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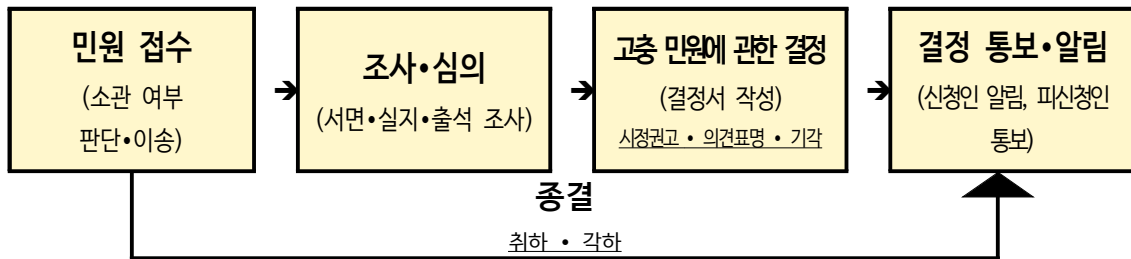
마. 신청 방법은 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

으며, 또한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음

바.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문서로 통지함

사. 고충 민원 처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음

〈민원 처리 절차도〉



2025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조례 및 시행규칙

1.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IV. 조례 및 시행규칙

1.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0]

(제정) 2023. 12. 20 조례 제20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 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 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자격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3.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시장 및 시의회에 ombudsman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ombudsman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7. ombudsman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ombudsman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 (ombudsman의 구성)

- ① ombudsman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 ②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ombudsman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③ ombudsman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관할 대상) ombudsman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

제6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의왕시 퇴직 공무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정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3항,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고충민원 신청·조사 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에 따른 특별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사무국)

-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인사·처우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지원)

-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 및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083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07. 15]

(제정) 2024. 07. 15 규칙 제94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왕시 옴부즈만

제2조 (옴부즈만)

- ① 의왕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활동일 및 활동시간)

- ① 옴부즈만의 활동일은 주 3일을 기본활동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활동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활동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활동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활동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읍부즈만의 1일 활동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읍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읍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등)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8조 (신청 및 접수)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읍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서의 보완)

- ① 읍부즈만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읍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반복·단순 고충민원 등의 처리)

-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실시 통보) 법 제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의 방법)

- ① 옴부즈만이 법 제 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 (합의)

- ① 옴부즈만이 법 제4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사 결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법 제4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법 제52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분증명서)

-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읍부즈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읍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사무국의 운영) 제22조의 사무국을 두지 않은 경우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공표)

-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읍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2. 읍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읍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기록의 관리)

- ① 읍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고충민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6조(공인의 사용)

- 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의왕시 공인 조례」 및 「의왕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정보의 공개) 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규칙 제940호, 202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